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제안년월일 : 2015년 03월 1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제안이유

-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7조)
- 교육정책국 분장사무에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예 관한 사항
-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 을 “예산담당관” 으로,
“책임교육과장” 을 “학생생활교육과장” 으로, “교육시설과장”
을 “교육시설안전과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 을 “대변인” 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9.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1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u>에 관한 사항</p>
<p>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9. 학부모 교육 및 지원</u>에 관한 사항</p>	<p>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9. 민주시민교육</u>에 관한 사항</p>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실·국간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교육위원장